

☎04373 서울특별시 용산구 청파로 삼구빌딩 7, 8층 [http://www.kma.org]/전화(02)6350-6533/전송(02)796-4487  
보험정책국장 이성민 [6574] 보험팀장 백영기 [6581] 팀원 임주연 [6533]/E-mail: kma6350@naver.com

문서번호 대의협 제813-10556

시행일자 2020. 12. 1.

수 신 수신처 참조

참 조

제 목 「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(약제)」 일부개정(고시 제2020-271호) 안내

1. 귀 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.

2. 관련근거 :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-3935호(2020. 11. 30.)

3. 상기 근거와 관련하여 보건복지부는 「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(약제)」 고시[보건복지부고시 제2020-271호(2020. 11. 30.)]를 일부개정하고 안내하여 온 바, 이를 안내하오니 귀 회 소속 회원들이 업무에 참고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#붙임: 1.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-3935 공문 1부.

2. 「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(약제)」 일부개정 1부.

끝.

## 대한의사협회장

“국민의 건강과 행복, 의협이 함께 합니다”

# 수신처 : 16개 시도지사회장, 대한의학회장(26개 전문학회), 대한개원의협의회회장, 각과개원의협의회회장